

#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

의안 번호	21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'14년부터 「민간 운영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선(先) 투자를 받아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을 먼저 시행하고, 사업 종료 후 서울시와 약정된 성과 기준에 따라 투자금 등을 상환받는 사회성과보상 사업」을 추진 중에 있음
- '18. 10월 현재 「경증지적장애 및 경계선지능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」을 위한 1호 사업(민간에서 11억 1천만원 선투자) 추진 중
- 나. 청년 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 재원 및 사업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(사업 완료 후 성과에 따라 원금 및 이자 보상)을 도모하고자
- 「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(2호사업) 추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미리 얻으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추진근거 : 「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」

나. 추진경과

- '17. 10월 「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성과보상사업(SIB) 아이디어 경진대회」 참가 요청 (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-990, '17.10.26.)
- '17. 12월 「SIB 아이디어 경진대회」 신청서 제출
  - 「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」 추진

- '17. 12월 「SIB 아이디어 경진대회」 심사결과 및 시상계획 통보  
(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-1749, '17.12.27.)
  - 서울시 우수상(행정안전부장관상) 수상, 시상금 8천만원(SIB 추진에 활용)
- '18. 3월 「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SIB 사업모델 개발 용역」 추진
- '18. 8월 「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SIB 사업모델 타당성 검증 용역」 추진

## 다. 사업개요

- 대 상 : 만19세~만34세 청년 취업취약계층 500여명
- 성과지표 : 국내·외 취업자 수 또는 창업자 수

- 취업 : 주40시간 근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취업  
(아르바이트, 초단시간 근로자 등 단기성 일자리 및 공공근로는 제외)
- 창업 :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한 창업

- 사업수행기간 : 3년
- 총 사업비 : 3,000백만원 (성과보상 인센티브 별도)
  - 사업수행비 2,540백만원, 운영비 360백만원, 평가비 100백만원
- 성과측정 : 평가기관이 1년 단위로 성과목표 달성 인원 수 측정
  - ※ 성과 측정의 투명성·명확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·운영기관·수행기관이 1년 단위로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프로그램 진행
- 운영기관 공모방법 : 제한경쟁입찰

## 라. 추진 필요성

- 2017년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10.1%로 전 연령 실업률(4.5%) 대비 2배 이상 높고 전국 평균(9.8%)을 상회함
  - 청년 실업이 지속될 경우, 개인의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 문제를 넘어 기업의 인력구조 왜곡 및 생산성 저하와 건강·출산·사회불신 등의 심각한 사회 요인이 될 수 있음

- 새로운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을 사회성과보상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재원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

※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아 재정 투입 및 전면적 시행이 어려운 혁신적 일자리 창출프로그램에 대해 SIB 연계시, 민간 재원과 전문성 확보 가능  
▶ 신뢰할수 있는 성과평가기법을 통해 민간 선투자로 실시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 평가하고 성공시 프로그램 전면 확대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 제6조(보상사업의 동의)

① 시장은 채무부담행위 성격의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## 나. 예산조치 : 운영기관에 지급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편성

- 예산과목 : 일반보상금-사회성과보상금(301-11)
- 예산 : 30억원(성과보상 인센티브 별도)
- 예산지급 : 보상계약에 따른 성과 기준에 따라 원금 및 인센티브 보상

####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노수임(☎2133-5482)